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|--|
| | <p>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·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.</p> |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u><신 설></u> | <p>제128조(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) 법 제185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”이란 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.</p> |

■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